# 두류역자이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3-741-0866

|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부 | 거주요건 | 재당첨제한 |
|---|---|---|---|
| 민영 | 비규제지역 | 대구광역시 | 없음 |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br>(현재 전매가능)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5.05.09.(금) | 25.05.14(수) | 25.05.15.(목) | 25.05.20.(화) | 25.05.21.(수)~<br>25.05.22.(목) | 25.05.27(화)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4.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O | | X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aedang01.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09(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20** 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2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652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5.05.14(수) | 25.05.15.(목) | 25.05.20(화) | 25.05.21.(수)~25.05.22(목) | 25.05.27(화) |
| 방 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불가 | | ▪ (PC·모바일) 청약홈 | ▪ 사업주체 조합사무실<br>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73 아세아빌딩, 7층<br>(내당동, 내당지역주택조합) |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구광역시 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10.13.)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 - **16968호(2025.05.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7개동 총 1,300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
**[특별공급 1세대(신혼부부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일반공급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신혼부부 | 계 | |
| 2025930020 | 01 | 84.9723A | 84A | 84.9723 | 29.9629 | 114.9352 | 62.2594 | 177.1946 | 18.1151 | 1 | 1 | 1 | - |
| | 02 | 84.9396D | 84D | 84.9396 | 31.9853 | 116.9249 | 62.2354 | 179.1603 | 18.4287 | 1 | - | - | 1 |
| | 합 계 | | | | | | | | | **2** | **1** | **1** | **1**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84A | 84D | 합 계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 - | **1** |
| **합 계** | **1** | **-** | **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금액 및 납부방법**

[ 단위: 세대,원 ]

| 주택형 (약식표기) | 동 · 호수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계약 시 | 입주 지정 기간 | |
| **84A** | 107동 - 2801호 | 1 | 332,270,400 | 411,729,600 | - | 744,000,000 | 74,400,000 | 669,600,000 |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2동 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
| **84D** | 104동 - 2003호 | 1 | 317,532,600 | 393,467,400 | - | 711,000,000 | 71,100,000 | 639,900,000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 잔금 납부계좌 | **신용협동조합** | **131-021-803570** | **㈜하나자산신탁** |

■ **유상옵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 주택형 (약식표기) | 동 · 호수 | 세대수 | 구분 / 품목 | | 유상옵션 금액 (원) | 계약금(10%) 계약 시 | 잔금(90%) 입주 지정 기간 | 비고 |
|---|---|---|---|---|---|---|---|---|
| **84A** | 107동 - 2801호 | 1 | - | | - | - | - | **※ 확장 및 옵션품목 변경불가**<br>- 해당 주택은 유·무상옵션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거부 시 계약불가)<br>- 현재 시공된 조건 그대로 주택 공급 계약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및 교체 수선 등은 불가합니다. |
| | **합계** | | | | - | - | - | |
| **84D** | 104동 - 2003호 | 1 | 마감 UP 플러스옵션 | 현관,복도,거실 마감 UP | 6,100,000 | 610,000 | 5,490,000 | |
| | | | 시스템 에어컨 (LG전자) | 3대 – 거실+침실1+침실2 | 4,830,000 | 483,000 | 4,347,000 | |
| | |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시스클라인) | 3대 – 거실+주방+침실1 | 2,760,000 | 276,000 | 2,484,000 | |
| | **합계** | | | | **13,690,000** | **1,369,000** | **12,321,000** | |

**[플러스 옵션대금 납부계좌]** ※마감UP 플러스옵션 해당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플러스옵션 계약금 · 잔금 납부 계좌 | KB 국민은행 | 006001-04-334883 | 지에스건설(주) |

**[가전옵션 대금 납부계좌]** ※가전 옵션 해당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가전 옵션 계약금 · 잔금 납부 계좌 | 신한은행 |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자이에스앤디(주) |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별도로 표기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 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잔금)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불법행위재공급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유상옵션(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 완료된 유상옵션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정확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 불가)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공공)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r>→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br>***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r>-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br>-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br>-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br>→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br>-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r>-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br>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br>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br>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td></tr>
</table>

##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r>■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br>선정방법</td><td>■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td></tr>
<tr><td>비고</td><td>
■ 소득기준<br>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5.05.09</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tr>
</tabl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
<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r><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td>140% 이하</td><td>~10,087,437원</td><td>~12,009,323원</td><td>~12,643,467원</td><td>~13,626,320원</td><td>~14,609,174원</td><td>~15,592,027원</td></tr>
<tr><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60% 이하</td><td>~11,528,499원</td><td>~13,724,941원</td><td>~14,449,677원</td><td>~15,572,938원</td><td>~16,696,198원</td><td>~17,819,459원</td></tr>
</tabl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br>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br>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br>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br>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br>
■ 자산기준<br>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br>
- 자산보유기준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br>(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br>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br>*「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br>-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조회기간** : 2025.05.20.(화) ~ 2025.05.29(목)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5.05.2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공통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25.05.21(수) ~ 25.05.22(목) 2일간]**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으로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정당당첨자의 계약서류 제출기간과 동일하며,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예정 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5.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인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체출초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시 '본인발급용'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으로 발급<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도장 제출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br>※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주민등록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인적사항 변경내용, 세대주성명/관계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초본 (전체포함)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상기 초본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 | ○ | | 자금조달계획서 | 본인 |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세부사항 기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br>※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과거이력 포함 발급)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청약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br>*[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 기본증명서 | |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당사 사무실 비치 (근로자 및 자영자가 아닌 경우) |
| | | ○ | 사실증명서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내용으로 발급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br>-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b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무주택 소명자료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출물대장등본<br>-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br>- 소형·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br>-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별도안내예정) |
| 대리인 제출시 (본인외 모두 제3자) | | ○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자격확인서류 제출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 절대 불가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내당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0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들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입증서류 ]**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 법인대표자 |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제무재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일용근로소득자 |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세무서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 세무서 * 접수장소 |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분 | 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일시 : 2025.05.20.(화)<br>■ 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5.05.21.(수)~2025.05.22.(목), 10:00~16:00<br>■ 장소 :<br>조합사무실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73 아세아빌딩, 7층 (내당동, 내당지역주택조합) | ■ 일시 : 2025.05.27.(화) , 10:00~16:00<br>■ 장소 :<br>조합사무실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73 아세아빌딩, 7층 (내당동, 내당지역주택조합)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br>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br>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br>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br>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br>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br>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br>*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br>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br>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br>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br>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br>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br>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br>-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br>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br>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br>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br>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br>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br>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br>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br>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 |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br>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br>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br>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br>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br>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br>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br>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10 단지 여건 등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공고 이외 상세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9.23.)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서류의 결격사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 통보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준공 중(2025.08 입주예정)인 상태로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불법행위재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변경 · 취소 등을 요구하실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복리시설**

| 복리시설 |
|---|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골프연습장,<br>문화강좌, 피트니스, 키즈카페, 독서실,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주차시설**

| 설치 예정 주차 대수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총 **1,992대**<br>(아파트 **1,721**대, 오피스텔 **112**대,<br>근린생활시설 **159**대 포함) | 2.7m | 2.7m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구분 | 등급 |
|---|---|
| 내진능력 | Ⅶ-0.224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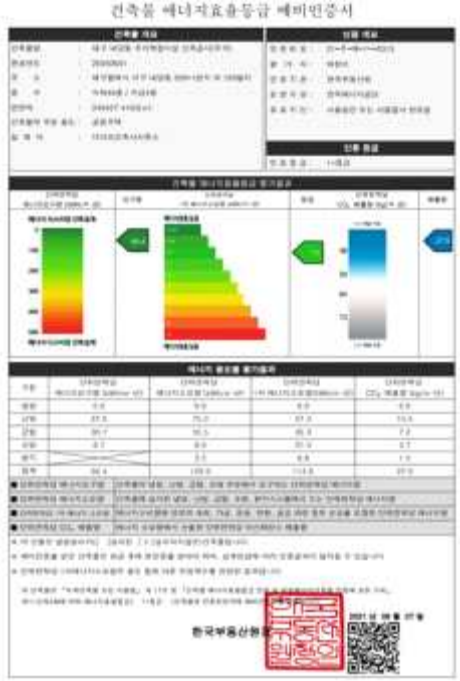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스보일러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지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전 및 동력설비 |
| |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사명 | ㈜경호앤지니어링&엄앤드이 | ㈜신우전기엔지니어링 | 한국안전기술(주) | |
| 감리금액 | 5,160,749,000 | 1,131,276,420 | 858,000,000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주택법」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  |  |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
|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55,615,000,000** | **01212022-101-00056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등**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7호,「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분양대금관리 |
|---|---|---|---|
| 상 호 | 내당지역주택조합 | 지에스건설㈜ | 하나자산신탁 |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73 아세아빌딩, 7층 (내당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 등록번호 | 403-82-81455 | 104-81-18121 | 110111-1714818 |

**■ 분양문의 : 053-741-0866 (평일 10:00~16:30, 주말·공휴일·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사무실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73 아세아빌딩 (7층) (내당동, 내당지역주택조합)**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 우선 적용)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